

산학협력전담교수제운영규정

제정 2013. 3. 1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력전담교수의 임면 및 활동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자격) 대경대학교 산학협력전담교수(이하 산학전담교수)의 자격은 본 대학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 교원(겸임교원, 초빙교원, 객원교수, 강의전담교수)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
2. 비전임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
3. 산업체 경력자
4. 산학협력코디네이터 과정 이수자
5. 기타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위촉하는 교원

제 3 조 (임면사항)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의 임기를 갖는다. 단, 필요한 경우 위촉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(업무) 산학협력전담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.

1. 학과별 산학협력업무 지원
2. 산학협력업체 발굴 및 가족회사 발굴
3. 산학협력업체 및 가족회사 운영
4. 현장실습(Co-op 포함) 업체 및 학생관리
5. 취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
6. 기타 산학협력단에서 부여하는 업무

제 5 조(지원) 산학협력전담교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는다.

① 산학협력전담교수가 전임교원인 경우

1. 책임시수 : 본 대학 학과장의 책임시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며,
2. 출강일수 : 주 2일 이상, 주 4회 의무 출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.
3. 직책수당 : 학과장과 동일하게 직책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, 산학협력전담교수가 산학협력단의 각종 사업에 운영위원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, 인건비성 수당을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산학협력전담교수가 비전임교원인 경우

1. 비전임교원의 출강 시간 규정을 준수하되, 산학협력 등의 별도 임무가 주어졌을 경우에

는 출강시간에 가름하여 적용한다.

2. 기타 지원 사항은 총장의 재가로 따로 정한다.

제 6 조 (조직)

1. 산학협력전담교수제의 운영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한다.
2. 산학협력전담교수도 동일하게 교원업적평가를 적용한다.
3. 산학협력전담교수는 학과별 1-2명으로 제한하며, 특별한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별도 제청 할 수 있다.
4. 산학협력전담교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경산학협력전담교수협의회(이하 협의회)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, 협의회는 회장, 부회장, 위원,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.
5. 협의회 회장은 산학협력단장, 부회장은 산학협력부단장으로 구성하며 일반 산학협력전담교수는 위원으로 운영하고,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이 한다.

제 7 조 (재정) 산학협력전담교수제의 재정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며, 이에 대한 운영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동 규정 제 5 조의 지원을 한다.
- ② 산학협력전담교수 운영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지원한다.
 1. 당해 연도 국고 지원사업
 2. 산학협력단 간접비
 3. 교비
 4. 기타 산학협력단 수입

제 8 조(운영세칙) 산학협력전담교수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